

# 알기쉬운 特許制度와 節次풀이

<特許廳 指導課>

## 14 權利的 管理

工業所有權은 權利者 스스로가 自己權利를 直接 實施하고 管理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가지 條件上 直接 實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權利를 讓渡하거나 또는 實施權을 許與할 수도 있다. 다음에 權利의 讓渡와 實施權許與에 대해서 簡單히 살펴보자.

### 1. 權利의 讓渡

工業所有權은 無體財產權의 一種이므로 이를 自由로 讓渡할 수가 있다.

讓渡는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依하여 할 수 있으며 登錄原簿에 登錄함으로써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讓渡의 形態는 賣買, 贈與, 交換, 會社에서의 現物出資等 契約에 依하는 경우와 財團法人의 設立行爲와 같이 單獨行爲로 되는 경우가 있다.

商標權의 경우에는 營業과 함께 移轉되어야 하며 聯合商標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聯合商標도 함께 移轉되어야 한다.

그러나 讓渡하고자 하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그 持分만을 讓渡할 수 없다.

### 2. 專用實施權

專用實施權은 特許權者(以下 實用新案權者, 意匠權者 包含)의 許諾 即 當事者間의 任意的

契約에 依하여 發生한다.

專用實施權者는 契約에서 定한 範圍內에서 業으로써 그 發明(또는 考案)을 實施할 權利를 獨占할 수 있는데 다만 特許權者 自身도 通常實施權을 가진다는 約定을 할 수가 있다.

專用實施權은 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其他 一般 承繼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特許權者의 承諾 없이는 그 專用實施權을 移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專用實施權者는 他人에게 通常實施權을 許諾하거나 質權을 設定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特許權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한편 專用實施權者에게는 審判請求權은 없으나 그 權利의 保護를 爲하여 權利侵害行爲의 禁止 또는 豫防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고 아울러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다.

專用實施權의 設定, 移轉, 變更, 消滅 또는 處分의 制限은 登錄을 해야만 効力이 發生한다.

### 3. 通常實施權

通常實施權은 特許權者(以下 實用新案權者, 意匠權者 包含)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他人에게 發明(또는 考案)의 實施를 許與하는 것으로서 當事者間의 契約에 의한 實施權의 경우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연히 發生하는 法定實施權의 경우 또는 行政處分에 依하여 強制的으로 發生하는 實施權의 경우 등이 있다.

通常實施權者는 特許法에 規定된 바에 依하여 또는 設定行爲로 定한 範圍內에서 業으로 그 發明(또는 考案)을 實施할 權利를 가지는 것이다.

通常實施權은 相續 其他 一般承繼의 경우 또는 特許法에 特別히 規定된 바를 除外하고는 特許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承諾없이 그 通常實施權을 移轉할 수가 없으며 또한 質權도 設定할 수 없다.

通常實施權의 移轉, 變更, 消滅이나 處分の 制限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 移轉, 變更, 消滅이나 處分の 制限은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 者에게 對抗할 수가 없고 다만 法定實施權의 경우에는 例外로 되어 있다.

#### 4. 商標의 通常使用權

登錄商標에 있어서는 特許, 實用新案, 意匠에서와 같은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의 制度와는 다른 通常使用權에 관한 制度를 두고 있다.

通常使用權의 設定은,

첫째,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支配關係에 있는 會社相互間(發行總株式數 또는 資本總額의 100 分の 50을 넘는 投資關係에 있는 會社相互間).

둘째, 外資導入法에 依한 外國今投資 또는 技術導入으로서 商標使用을 包含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의 許可를 받은 會社相互間 또는 技術導入契約의 當事者間.

이 경우에는 指定商品을 誤認시키거나 欺瞞할 憂慮가 없고 品質의 同一性을 保障하는 것이라고 認定할 수 있을 때에 그 設定의 登錄을 許與할 수 있다.

### 15 外國協定關係

#### 1. 工業所有權에 관한 國際機構

##### 가. 파리同盟

工業所有權의 國際的保護와 自由로운 交流를 爲하여 1883年 파리에서 締結된 工業所有權保護同盟協約에 依하여 組織된 것으로서 現在 加盟國은 88個國이다.

이 同盟에 加入한 國家의 國民은 同盟國中 어느나라에 出願하여도 權別를 保護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優先權主張도 認定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 優先權이란

優先權이라 함은 어느 한 나라에 出願한 것을 一定期間內에 다른 나라에 出願하였을 때에는 그 出願의 出願日을 最初出願國에 出願한 날자로 遡及하여 認定받는 權利로서 우리나라 特許權도 外國人出願時에 이 制度를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 對하여 이를 認定하는 것이 아니고 國家相互間에 이를 認定하기로 한 國家의 國民에 限해서만 이 權利를 許與하고 있는데 現在 우리나라와 우선권을 認定하기로 約定한 國家는 舊法當時(1973. 12. 31 以前)의 出願分과 그 以後의 出願分에 따라 各各 다르며 그 國家는 다음과 같다.

##### ○ 1973. 12. 31 以前 出願分

西獨, 캐나다, 파나마, 홍콩, 스위스, 英國, 濠洲, 오스트리아, 스웨덴, 日本,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美國, 프랑스, 벨지움, 네덜란드, 自由中國,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상 20개국)

##### ○ 1974. 1. 1 以後 出願分

스페인(特許, 實用新案, 意匠)  
스위스(特許)  
英國(特許, 實用新案, 意匠)

##### 다. WIPO

世界知的所有權機構(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略稱으로서 國家間 또는 他國際機構와의 協定을 通하여 知的所有權의 保護를 促進하여, 知的所有權에 관한 國際條約이나 協定에 依하여 創設되는 各同盟國間의 行政上의 協力을 確保함을 目的으로 1967년에 設立되어 1970년에 發効된 機構로서 會員國은 84個國에 達하고 있다.

現在는 UN 專門機構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79年 3月 1日자로 이 機構에 加入 하였다.

<계 속>